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7. 5.

발 의 자 : 임춘구 의원 외 6인

1. 제안 이유

- 농산물의 시장개방 가속화, 농업구조 및 농업위상의 변화 등 다양화 전문화 되어가는 농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미시 농업·농촌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함.

2. 주요 내용

-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건전소비 등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를 정함 (안제3조)
- 농업 관련 주체들의 농정참여 보장 및 농업 관련 주체간 협력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시장이 지역농업 육성발전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내지 제9조)
- 농정의 입안과 예산수립과정에 수요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협의회 설치 및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정함 (안 제11조 내지 제17조)

3. 참고 사항

- 「농업·농촌기본법」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 ①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역 주민 및 관내 기업체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소비 할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관련 주체간 협력) 시장은 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인 등 농업 관련 주체들의 농업 관련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농정의 기본방침) ①시장은 농정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 농업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촌지역개발과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농촌 자원의 보전과 이용) ①시장은 농촌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쾌적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활력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개발과 농업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경쟁력 강화 등) ①시장은 농업 소득 증대 및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유망한 농업 관련 업종이나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지원사업
2.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자조금의 지원사업
3.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4. 농업인력(전업농·후계자 등) 육성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지원사업
5. 농산물의 가공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농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7.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8.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의 육성, 유통시설 확충, 물류표준화, 참여 농업인의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자발적 참여 유도) ①시장은 농정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 관련 예산 편성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11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설치) 시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지원 및 농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시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정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농정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시의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소비자단체의 임원

3. 농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회사법인·조합의 임원, 선도농업인

4. 농업·지역개발분야 전문가

5. 농산물의 가공·유통·수출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협 의 회 위 원 장 의 직 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농정기획담당이 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필요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농업정책 분과위원회
2. 축산업정책 분과위원회
3. 산림정책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분야별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 각 단체 및 농업인의 의견 수렴, 세부 실천과제 등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사 항

□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서명

[illegible]